

소방방재청고시 제2009-31호

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09년 8월 24일 소 방 방 재 청 장

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4)

행정자치부고시제2004-33호(2004. 6. 4.)

소방방재청고시제2006-39호(2006. 12. 30.)

소방방재청고시제2008-50호(2008. 12. 15.)

소방방재청고시제2009-31호(2009. 8. 24.)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“인입개폐기”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.
- 2. “저압”이라 함은 직류는 750V 이하, 교류는 600V 이하인 것을 말한다.
- 3. “고압”이라 함은 직류는 750V를, 교류는 600V를 넘고 7,000V 이하인 것을 말한다.
- 4. “특별고압”이라 함은 7,000V를 넘는 것을 말한다.
- 5. “변전소”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.

제4조(전원 및 콘센트 등) ①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- 1.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,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
 - 2.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,000㎡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(차고·주차장·보일러실·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)의 합계가 3,000㎡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기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. 다만,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3.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,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(NFSC 602)에 따라 설치할 것
 - 가.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
 - 나.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
 - 다.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
 - 라.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.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의외의 것(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)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.
 - 마.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
- ②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(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)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- 1.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3상교류 380V인 것과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, 그 공급용량은

3상 교류의 경우 3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.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<개정 2008.12.15>

2.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. 다만,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.

3.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. 다만,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

5.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(KS C 8321)를 설치하여야 하며,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6. 개폐기에는 "비상콘센트"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

7. 비상콘센트용의 폴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, 두께 1.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

8.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.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(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)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.

③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3상교류 38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3극 플러그접속기(KS C 8305)를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(KS C 8305)를 사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12.15>

④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반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.

⑤비상콘센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1. <삭제>

2. 바닥으로부터 높이 0.8m 이상 1.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

<개정 2008.12.15>

3.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,000㎡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의 출입구(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)로부터 5m이내에, 바닥면적 1,000㎡ 이상인 층(아파트를 제외한다)에 있어서는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(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)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,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

가.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,000㎡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

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

다. <삭제 2008.12.15>

⑥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 이상일 것

2.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,000V의 실효전압을,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,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

제5조(보호함)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1.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

2. 보호함 표면에 "비상콘센트"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

3.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. 다만,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.

제6조(배선)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,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

2.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(NFSC 102)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것

제7조(설치·유지기준의 특례)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·개축·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·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·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8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.

부 칙(2004. 6. 4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06. 12. 30.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12. 15.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8. 24.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